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홍대입구역 게이트 신설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수의시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계약정보

- 가. 시담건명 : **홍대입구역 게이트 신설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 다. 기초금액 : **금9,195,000원(금구백일십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 마. 규격 및 수량 : 명세서, 규격서 등 참조
- 바.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규격서 등 참조)
-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금195,93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검수 시 사용내역서 최종 확인 후 사후 정산합니다. (물품명세서 참조)

2. 수의시담 일정

- 가. **시담일시 : 2026. 7. 28.(화) 15:00 ~ 16:00**
- 나. **개찰일시 : 2026. 7. 28.(화) 17:00**
- 다.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 라. 시담절차 : ①나라장터 로그인 → ②조달업체 업무 → ③물품 → ④투찰관리 → ⑤수의시담 조회 → ⑥조회(해당 공고) → ⑦시담내용 현시 → ⑧투찰 ※조달청 공고번호로 조회

3. 낙찰조건 및 계약 유의사항

- 가. 낙찰자 선정기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 나. 예외사항: 예정가격(공사에서 별도 산출한 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
- 다. 제출 의무사항 ※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추가 안내 예정
 -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미해당 확인 각서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이행 및 각종 권리보호 관련 서약서 제출
 - 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②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③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4. [기타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2)품목별 계약금액 1억원 이하 3) 단순 구매계약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입찰담당자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홍정아 ☎02-6311-9243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